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안내 의무〉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임신부를 위한 지원정책 안내 의무	2

I. 개요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7. 19.
-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신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신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신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임신부를 위한 지원정책 안내 의무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임신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임산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원 대상·내용·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른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임신부가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모자보건수첩 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¹⁾ 다양한 지원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산부 개인이 이러한 지원정책을 본인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안내받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될 것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처럼 임산부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이러한 지원정책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임산부의 이용률을 높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하여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위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홈페이지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이 운영되고 있고, 현행법 제9조²⁾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발급되는 모자보건수첩을 통하여도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절차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되고 있음.

1) p.6. 참고자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정책 현황 참조

2)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요 >

-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보장정보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임신·육아 종합 공익 포털사이트**로 '20년 11월 말 현재 약 364만 여명의 회원이 이용 중
- * 월평균 방문자수: 360,000여명
- * 사이트 주요서비스: **임신육아 콘텐츠 제공, 상담센터 운영, 보육(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등) 관련 정보 제공 등**
- 임신, 출산, 육아 등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성건강,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전후우울증, 모유수유, 육아 등 온라인 전문가 상담 운영
-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을 위한 전화상담(1644-7373) 운영
-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공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화면 -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안내하는 주체는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안내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안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을 것임.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대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모자 보건수첩 등을 통하여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있어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는 않음.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세부 내용을 주관 부처가 아닌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안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병원협회	임산부에게 지원 정책을 누락없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정책 현황

구분	서비스명	지원대상	홍보방법	신청기관	신청방법
1	모자보건수첩 배부	일반 임신부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방문/온라인 (정부24,e보건소)
2	엽산제·철분제 지원	일반 임신부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방문/온라인 (정부24,e보건소)
3	임산·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일반 임신부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온라인(홈 페이지·SNS 게시, 공단 고객센터 음성메시지 등)	건보공단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카드사	방문,팩스,전화/ 온라인 (정부24,공단카드 사 홈페이지)
4		청소년 임신부 (만 19세 이하)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보 건소,미혼모 자시설 등	인터넷/방문
5		의료급여 수급자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시군구	방문/인터넷
6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e보건소	방문/인터넷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등)	보건소	방문/온라인 (정부24,e보건소)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오프라인(리플릿 제작·배 포), 온라인(정부24, 복지 로 정책 안내)	보건소	방문/인터넷 (정부24,복지로)
9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및 확진아 특수식이등 지원	영아(특수식이는 만19세 미만)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e보건소	방문/인터넷
10	선천성 난청 외래 검사비 및 보청기 구입비	영아(보청기는 만5세 미만)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e보건소	방문/인터넷
1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e보건소	방문/인터넷
13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	온라인(홈페이지 게시)	주민센터, 복지로	인터넷/방문
15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산부 및 만 2세미만 영아 가정	오프라인(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배너 제작·홈페이지 게시, 아 이마중앱 사업안내 등)	보건소, e보건소	방문/인터넷

* 자료 : 보건복지부

